

2012년 6월 30일 시행

제18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①		

응시자 준수사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12. 6. 30.(토) 19: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기간 : 2012. 7. 2.(월) 12:00 ~ 2012. 7. 4.(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12. 7. 19.(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1과목 50문제】

①책형

【현법 20문】

【문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② 헌법은 변호인의 구체적 변호활동에 관한 결과의 실현까지 국가 또는 법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 ⑤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 위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열람·등사의 절차 및 대상, 열람·등사의 거부 및 제한 사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제재 등 그 상세한 내용의 형성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는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 2】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의 임기와 중임, 연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문 3】 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 ③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중개하거나 대신하여 그 이해관계나 의견 또는 희망을 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청원권을 제한한다.
- ⑤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문 4】 대통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입법형식이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④ 정역형의 집행유예와 별금형이 병과된 상태에서 정역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된 경우 병과된 별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
- 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하여 통할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행

【문 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보충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④ 동행계호행위 자체는 권리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6】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7】 다음 중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리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리분립론에 있다.
-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문 8】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행

【문 9】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위헌의견의 주된 논거이다.
- ②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한바 있다.
- ④ 합헌의견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적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오후 6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한 허가금지 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일몰시점을 규제의 정당성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 ⑤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2인은 헌법불합치의견, 2인은 합헌의견을 냈고 헌법불합치 선언 및 잠정적용 명령으로 결정되었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다.

【문10】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 사건(대법원 4291형상559,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
-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문1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바,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②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데, 다만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⑤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문12】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더라도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 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자기 노력의 맷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물론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제2문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④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문14】 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함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 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문1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분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문16】 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문17】 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적용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문19】 행복추구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용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
-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 ⑤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20】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기술된 것은?

- 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 ③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 ④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⑤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상 법 30문】

【문2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
- ②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절차는 소집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통지·공고할 필요가 없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는 없다.
- ④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 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22】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제출하여 주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이상 그 주주가 단순한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③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라 하더라도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 다음 중 상법상 항공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데, 위 손해 중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③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위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24】 어음의 원인관계 또는 인적항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③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 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이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문25】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③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④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⑤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문26】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2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항공운송에서의 항공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외하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④ 선장은 선적항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선적항 외에서는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 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문27】 다음 중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 ②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해태한 때
- 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행

【문28】 운송업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문29】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이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 ②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위조의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④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 ⑤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문30】 다음 중 주식인수인의 납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의 효력이 없다.
- 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③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외에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문31】 합병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 ②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1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존속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 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문32】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보증보험계약이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창고업자의 임차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33】 상법상 합병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② 합병회사의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과 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④ 합병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회사설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1과목 50문제】

①책행

【문34】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문3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 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
-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클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헬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문36】 수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37】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② 이사의 배우자 등의 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③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 ④ 정판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의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그 거래는 유효한데, 여기서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38】 손해보험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 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문39】 다음에 열거한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권리행사시 요구되는 주식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 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② 이사 해임청구권
- ③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④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⑤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행

【문40】 공동해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잔존해야 한다.
- ②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전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 ③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할 때에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 ④ 공동해손은 적하나 선박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인명구조를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되지 않는다.
- ⑤ 공동해손분담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다.

【문41】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 ②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환사채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
- ④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문42】 다음 중 약속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등을 적어야 하는데, 만기, 지급지,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 ⑤ 약속어음에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보증된 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문43】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 ②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하지 못한다.
- ④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 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문44】 회사의 설립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②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는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주장할 수 있다.
-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소급하여 미친다.
- 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45】 상법상 선박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② 선박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선박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쌍방 선원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④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문46】 다음 중 환어음의 유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구
- ② 지시금지문구
- ③ 일람출급어음에 있어서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의 약정
- ④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
- ⑤ 분할출급문구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 ②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문48】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로부터 해임되지 않는다.
- ②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 대표이사는 회사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문49】상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련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회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회사 채권자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④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문50】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②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
- ③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
- ④ 이사회소집권
- 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 민 법 40문 】

【문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거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 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 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 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 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 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문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 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에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범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문 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②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 ④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생긴다.
- 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5】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나 그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⑤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②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③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문 7】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 ④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⑤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

【문 8】민법상 기간과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도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 출생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 소유로 귀속한다.
- ⑤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10】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 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1】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③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 ④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
- ⑤ 확정된 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⑤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문13】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으로서 체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②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문14】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 ③ 태아는 현행 민법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 ④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성년자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재산의 낭비로 자기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다.

【문15】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언제나 그 효력이 있다.
- ③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문16】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17】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자는 자신이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죽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②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 ③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문19】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폐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⑤ 미성년자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문2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만 있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무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21】 상속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사주재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 ④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22】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가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 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행

【문24】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없다.
- ②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문2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금여에 해당한다.
- 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약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④ 불법원금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 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26】 사실혼 등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 의사의 합침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다.
- ②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문27】 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 ②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2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②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29】 가동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동기인 가동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동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동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② 가동기가 담보가동기인지 여부는 그 가동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③ 가동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동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동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④ 가동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동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동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동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 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동기 시점이 아니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0】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④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

【문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문32】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④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 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3】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②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4】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문35】 연대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④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사람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36】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통행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한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 ②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⑤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38】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 ②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⑤ 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문39】 종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종이 그 종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려면 종종 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 ③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종유에 속한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종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종유로 한다.

【문40】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 신고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다)

-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 ②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문42】 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가능하다.
- 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한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 출생신고의무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④ 병원,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항해일지등본을 도착한 항구의 시(구)·읍·면의 장(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문44】 인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③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 시,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 시, 강제인지는 판결확정 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 이며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祖父)가 손자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 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생부(生父)는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문45】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 ② 개명허가 사건
-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사건
- ④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
- 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사건

【문46】 국적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 ③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부의 미성년의 혼인중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④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의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와 동시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⑤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라도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문47】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문48】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 ④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철회, 경합 및 주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고적 신고는 수리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창설적 신고는 수리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③ 동일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 나중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이미 기록이 되었다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
- ④ 재판상이혼 신고의 경우 신고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보완하려는데 그 확정일자가 신고일 이후인 경우라도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 ⑤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동의가 흠헬되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부모 등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만을 빠뜨린 경우라면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문50】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는?

- ①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
- ② 출장소장
- ③ 재외공관장
- ④ 면장
- ⑤ 동장

2012년 6월 30일 시행

제18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①		

응시자 준수사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12. 6. 30.(토) 19: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
기간 : 2012. 7. 2.(월) 12:00 ~ 2012. 7. 4.(수) 17:00
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12. 7. 19.(목) 12:00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 다음은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 ③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문 2】 임금채권 등의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배당된다.
- ③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며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 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 부동산강제경매의 매각허부결정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
-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차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 ④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반승계가 있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승계인이 아닌 원래의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새로 매각을 실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4】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이하 우선채권이라고 함)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한 그 중 일부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⑤ 집행비용은 항상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우선채권에 해당하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이 아닌 장차 경매종료시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우선채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문 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제도 중 가압류에만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 ②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③ 해방공탁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④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 ⑤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 다음은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 ②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⑤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문 7】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류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 ⑤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문 8】 가압류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문 9】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 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상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 ⑤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이유의 존부와 집행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10】 목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평가를 명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 ④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비록 그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문11】 다음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② 피고는 소외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외 갑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 ③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때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⑤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 다음은 금전체권집행의 현금화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② 여러 개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문13】 다음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 ②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 ③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4】 다음은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 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⑤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해 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문15】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 ②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6】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17】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하고, 단순한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상호변경이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단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 ③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별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다.
- ④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
- ⑤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19】 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

【문20】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유체동산집행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있으나, 집행판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법정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 ④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판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21】 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의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
-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다.
- 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문23】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집행의 효력은 그 취하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 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문24】 다음 중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 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차이의의 소
-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 ③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④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및 촉탁서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촉탁서상 등기원인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연월일은 “개시결정일자”를 기재한다.
- ④ 촉탁서상 등기목적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기재한다.
- ⑤ 촉탁서상 과세표준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재하는데,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였다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문26】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 ④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문27】 주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접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접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28】 금전채권 의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②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문29】 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일괄매각결정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30】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 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 ①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 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32】다음은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문3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 ②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 ④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문34】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문35】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소위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하였다면 기간 단축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금전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할로 인한 갑(甲)회사의 변경등기와 을(乙)회사의 설립등기는 반드시 갑(甲)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혼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였다면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 전에 법원에 대하여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38】 다음 중 주식회사 이사의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④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 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39】 다음 중 각종 회사의 해산등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 ②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 ③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산을 결의한 때
- ④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 때
- 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문40】 주식회사의 전환사채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 ② 총액인수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사채청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③ 전환사채의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41】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문42】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치분을 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④ 법인은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이 아닌 자는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 ⑤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43】 다음 중 법인 관련 비송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에서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 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
- ③ 법인의 해산·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 ④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 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식청약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 ②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④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언제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문45】 다음 중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③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

【문46】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회사설립등기와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선임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지배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다.
- 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47】 다음 중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48】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②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절권자가 부담한다.
- ④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문49】 다음 중 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비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④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 ⑤ 재판에 대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50】 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투자회사의 경우 그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저액은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 ④ 투자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이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 ⑤ 투자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금전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제4과목 50문제】

①책형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 까지 같음)

A토지의 소유자인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①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정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정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④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이유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2】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甲)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위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기한 것일 경우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이 위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위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 3】 지상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문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종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문 5】 다음은 등기신청의 취하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 하였다면 그 중 일부 부동산만에 대한 취하는 할 수 없다.
- ④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신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 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인 첨부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 7】 「농어촌정비법」상 환지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고시의 통지를 받아 해당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변경등기는 할 수 있다.
- ②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 ③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지의 경우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의 공유지분은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 8】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있다.
- ② 공중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 ④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 9】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계약서의 견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견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견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견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④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모두 견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신청서와 견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 그 견인계약서에는 반드시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문 10】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도 제출)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다음 중 합필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 ①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 ②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
- ③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 ④ 수필지의 토지의 공유자는 동일한데 그 지분이 각각 다른 경우
- ⑤ 수필지의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의 관할 등기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등기소의 상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상급법원의 장은 관할등기소를 지정한 즉시 관할등기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1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③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④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 ⑤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문15】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②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여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의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16】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결주문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채권최고액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②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조정조서에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 ⑤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명령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문17】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등기기록의 문자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으로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②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록한다.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하는 아니 된다.

【문19】 경매 및 공매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②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④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도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기입등기촉탁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문20】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④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문21】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개의 등기기록상 건물이 그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중복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때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고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의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문22】 다음은 가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적 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문23】 감·율·병이 대지를 각 1/6, 2/6, 3/6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지상에 면적이 동일한 3개의 전유부분(101호, 201호, 301호)을 가진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들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101호는 감, 201호는 율, 301호는 병의 각 단독소유이다)

- ① 101호는 1/6, 201호는 2/6, 301호는 3/6이다.
- ②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다.
- ③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먼저 토지의 지분을 2/6으로 균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문24】 감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율이 이전받는 경우 다음 중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지분 일부이전
- ② 감지분 2분의 1중 2분의 1 이전
- ③ 감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 ④ 감지분 4분의 1 이전
- ⑤ 감지분 2분의 1중 일부(2분의1)이전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 다음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내에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③ 회생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⑤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27】 다음은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 없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28】 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 ① 등기신청 위임장
-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 ③ 인감증명
-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문29】 다음 중 보존기한이 가장 짧은 장부는?

- ① 신탁원부
- ② 확정일자부
- ③ 결정원본 편철장
- ④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⑤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문30】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 ① 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 ②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③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⑤ 주소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공탁법 20문】

【문31】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
- ②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인이 공탁관의 출금지시 전에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 ④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32】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1억 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 병(丙)은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전액을 출금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병(丙)이 친구 정(丁)을 시켜 출금 청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서면이 아닌 것은?

- ① 공탁통지서
- ② 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③ 병(丙)의 인감증명서
- ④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 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민법 제489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물출금청구권의 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 ②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또는 공탁소에 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된다.
-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문34】 다음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피고가 가집행선고 불은 폐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 ②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가압류나 가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폐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금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
-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갑(甲)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갑(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문35】 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을(乙)의 채권자 병(丙)의 압류 및 주심명령(압류청구금액 : 1억 원)을 송달받고,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갑(甲)은 을(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 공탁통지서 및 배달증명할 수 있는 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갑(甲)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다.
- ③ 갑(甲)이 차오로 2억 원을 사유신고한 경우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이 차단되므로 공탁 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④ 갑(甲)이 병(丙)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丙)은 갑(甲)을 대신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갑(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 병(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문36】 다음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대한민국(소관 : 00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할 수 있다.
- ⑤ 변제공탁의 경우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문37】 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팔호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기재할 수 없다.
- ⑤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탁을 한 후에도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탁자가 공탁 후 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
- ④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수제한신고된 내용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39】 다음은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 ③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암류 또는 가암류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문40】 평택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갑(甲)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을(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병(丙)의 가암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정(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전에 정(丁)에게서 갑(甲)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 소유자인 정(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 ① 갑(甲)
- ② 정(丁)
- ③ 갑(甲) 또는 정(丁)
- ④ 갑(甲) 및 정(丁)
- ⑤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 또는 정(丁)

【문41】 다음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후에 제출된 자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문42】 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시 개명사실이 등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탁서정정을 할 필요는 없다.
- ②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암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암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 ③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 ④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⑤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문43】 다음은 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 ②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 ⑤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 다음 중 “공탁관”에 대한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 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그러나 공탁관에 대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의 감독은 내부적 행정감독에 불과하다.
- ② 지방법원장이 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공탁관은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은 공탁물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물지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의 기재 자체로 보아 인장위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물지급청구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⑤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추심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공탁관에게는 사무처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45】 다음 중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가장 유효한 것은?

- ①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 ② 물품대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 ④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문46】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 ③ 시·군법원의 공탁관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재판상 보증공탁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④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⑤ 공탁자가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47】 다음은 공탁관 사유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송달의 선후와는 무관하게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액에 대하여 갑(甲)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乙)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는데, 선행하는 갑(甲)의 가압류가 해제되어 을(乙)이 직접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

【문48】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시·군법원의 공탁관은 변제공탁의 경우,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당해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한다.
- ② 피해자 을(乙, 서울 서초구 거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 갑(甲, 수원 거주)이 치료비 500만 원을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데, 을(乙)이 업무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문한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의 처리 지침’에 따라 가능하다.
- ③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직권으로 공탁통지서를 집행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발송할 수는 없다.
- ⑤ 공탁서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서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탁소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문49】 甲(갑)은 乙(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의 채권자 丙(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 원)을 송달받고, 甲(갑)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병)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을)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권자 丙(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병)은 공탁소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⑤ 공탁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천만 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 다음은 수용보상금공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후 보상금을 공탁할 때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공탁서에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 ③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재결서상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④ 이의재결절차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은 실효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